

#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 『이웃만들기 지원사업』 공고

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『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 제 3조에 의거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 동 단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금천구 마을공동체 『이웃만들기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.02.15

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



## I 개요

- 사업명 :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11월15일
- 신청자격 : 같은 동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
  -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
  -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
- 예산규모 : 총 2,000만원 (모임별 50~100만원 이하)
- 지원범위 :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·컨설팅 지원
- 사업목적  
동 단위 생활권에서 가까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지원
- 사업내용 및 예시
  - 동네 놀이터를 거점으로 한 ‘아이돌봄’공동체 형성
  - 어르신들 스스로의 욕구를 담은 어르신 공동체 형성
  - 안전하고 살 맛 나는 동네 만들기 위한 공동체 형성
  - 이웃과 나누는 1+1 반찬 만들기 공동체 형성

- 혼밥 해결을 위한 밥상공동체 형성
- 마을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형성
- 그 외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등

#### ○ 지원제외대상

- 정치, 종교, 유흥,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
- 개인·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
- 직업훈련, 교과목 특기적성, 어학,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
-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(단체, 법인)
- 조직,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1회성 행사 및 축제, 일방적·수혜적 복지사업

## II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

#### ○ 제출서류

- 사업제안서 (사업계획서,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) [붙임1]

#### ○ 접수처 및 접수방법

- 접수마감 : 2021.03.01(월) 23시까지 (1차 접수마감)
- 접수방법 :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maeul.org>)접수  
(회원가입 > 지원사업 > 신청 및 접수 > 금천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선택 > 신청하기)

※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

※ 1차 심사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
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

#### ○ 사전상담

- 기 간 : 2021. 2.15.(수) ~ 2.26.(금)
- 내 용 : 사업 참여자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, 제안서 작성 지원
- 신 청 : 전화신청 후 내방상담

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☎ 02-809-8826

※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위해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

※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상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.

## ○ 사업절차

2.15.(월) ~3.1.(월)	사업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</li> <li>◦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, 금천구청 홈페이지</li> <li>◦ 금천구 마을관련 밴드 및 SNS</li> </ul>
2.15.(월) ~3.1.(월) 23시	서류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</li> </ul>
2.15.(월) ~2.26.(금)	사업설명회 및 사전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금천구통합공모사업설명회</li> <li>- 일시 : 2.15.(월) 14시</li> <li>- 장소 :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</li> <li>◦ 사전상담(전화예약 필수)</li> <li>- 기간 : 2.15.(월) ~ 2.26.(금)</li> </ul>
3.4.(목) ~3.10.(수)	서류심사 및 제안자참여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류심사 : 3. 4.(목)</li> <li>◦ 제안자참여심사</li> <li>- 일시 : 3. 8.(월)</li> <li>- 대상 : 이웃, 공동체, 소소한 마을전시회</li> </ul> <p>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/p>
3.11.(목) ~ 3.24.(수)	실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협약, 보조금 통장개설, 회계교육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실행계획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</li> <li>◦ 공동체명으로 보조금통장 개설</li> <li>◦ 장소 :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</li> <li>◦ 협약식과 회계교육 함께 진행</li> </ul>
3.29.~3.31.	사업비 교부(사업실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협약 및 보조금 통장개설 완료 후 사업비 교부</li> </ul>
4월	선정자 워크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지기 네트워킹 파티</li> </ul> <p>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/p>
4월~9월	찾아가는 마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마을공동체이해교육(상설) : 신규공동체</li> </ul>
4월 ~ 7월	중간컨설팅 및 회계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 부터 실무책임자와 1:1 맞춤 교육·컨설팅</li> </ul>
사업기간 중	모니터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동체 사업 중 진행되는 주요행사 등</li> </ul>
사업마감 일 전/후	사업마감 및 정산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수시정산</li> <li>사업 마감일 ~ 11월25일까지</li> </ul>
9월 ~ 11월30일	정산 및 결과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9월 ~ 11월30일까지</li> </ul>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
### [회계교육]

투명한 사업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시스템, 소득세 등(원천징수 신고 납부) 등 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정된 공동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

### [선정자 워크숍 및 집합 컨설팅]

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강화를 위한 집합 컨설팅

### [찾아가는 마을교육]

주민모임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협동의 가치를 학습하고, 각 주민모임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계획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 ※강사료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

- 교육내용
  - 마을공동체 이해(보수교육)

### [컨설팅 및 모니터링]

공동체 사업별로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사업 시작부터 정산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자원연계 하는 '책임 지원' 방식으로 운영

## III 심사기준

### ○ 심사방식

구 분	내 용
서류심사	◦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
제안자 참여심사	◦ 서류심사에 선정된 모임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제안자 참여 심사 진행 ◦ 주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서면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고 선정심사의 객관성 제고 ◦ 사업에 참여한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해 결정하므로 마을공동체 사업 목적과 취지를 학습하고 주민 간 연대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형성

○ 심사기준

심사항목 예시		내용 예시
사업 타당성	① 사업의 필요성	•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,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
	② 사업의 공익성	•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•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
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	③ 사업 현실성	•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•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•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
	④ 자발적 주민 참여	•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•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
	⑤ 예산 현실성	•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•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•재정 자립 가능성(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)
	⑥ 민관 파트너십	•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•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

## IV 준수사항

○ 준수사항

-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필수
- 선정자 워크숍(네트워크파티/성과공유회) 대표제안자 참여 필수
-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
-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(사업마감 11월 15일, 결과보고서 제출 11월 30일까지)  
**※ 수시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업마감 후 바로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**

○ 유의사항

-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<2021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>에 따름
-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마을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·반환하여야 함

<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는 회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>

-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
- 법령 및 조례 위반
-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
-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했을 때
- 개인·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
- 정치, 종교, 유흥,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 한 경우

※붙임

1. 2021 금천구마을공동체 『이웃만들기 지원사업제안서』 1부  
(제안서,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)
2. 2021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집행기준 1부. 끝.